이 문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수정, 변경, 복사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고 제2026 - 1 호

민원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1AA-2606-0585842, 1AA-2606-0650011)에 대한 답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

1. **공고제목**: 민원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7.(화) ~ 7. 21.(화)
3. **공고장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세부내용**

공시송달 제목	대상자	소재지	송달내용	비 고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김*영	경상남도 고성군 동외로 ******,***동,***호	[덧붙임] 참조	'26. 7. 7. 등기반송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 공고기간 종료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02-3299-3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7 13:30:09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th********

[덧붙임]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606-0585842, 1AA-2606-06500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이하 '토론회') 진행 중의 발언에 대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법성 해당 요건 등에 관한 법리 검토 및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설령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됩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방송사(사회자)가 토론회 도중에 발언의 진위 및 위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판단하여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4.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토론회 준비 및 진행 절차, 사회자 진행 요령, 토론자 안내 사항,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유의사항 등 토론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실무 기준이 포함된 사무편람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작·배포하여 통일적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토론회 제도 보완 및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1. 선거제도에 관한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의견은 반복 선거법 위반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여야 하고 선거범죄 위반 여부를 수사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당사자의 선거보전금 지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범죄경력을 가진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느 범위의 범죄경력까지를 상습·반복 선거범죄 위반 행위로 보고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 시에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은 범죄 종류의 구분 없이,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선거범죄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또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여 각 세대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고지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선거권 제한 및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 외에 선거범죄 수사 혹은 재판 중인 당사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분할

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죄추정원칙은 개인에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절차에서 유죄임을 전제로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해석·적용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무죄추정원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불이익은 형사사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나 불이익도 포함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참조).

7. 따라서 귀하의 제안과 같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불이익한 처분 등을 가할 수 없으며, 이는 현행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 관련 법조문 1부.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각목 생략)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선거공보)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

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